

# 외국인 건설근로자 강제출국에 따른 건설기능인력난 우려

## 외국인 건설근로자 1만7천명 합법화 신청

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력 정책의 큰 줄기가 결정되었다. 아울러 외국 인력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주 여부 또는 공정에 따라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외국 인력의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노동허가제’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법률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법률에 의거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게 지난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마치게 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작하고 강제로 추방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신청을 받은 결과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 체류 확인을 한 외국인들은 18만9천6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 22만7천명의 83.5%로 이 중 16만5천193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법화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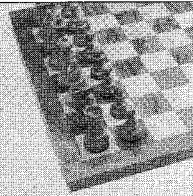
또 건설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동포 중 1만7천501명이 합법화 신청을 해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업종별로는 일반건설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1만1천69명, 전문건설업체 소속이 6천432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건설업의 경우 지난 3월31일을 기준으로 총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외국국적동포 중 신청일 당시 건설업(공사규모 300억원 이하)에 고용되어 있는 자가 합법적인 취업 신청을 할 수 있었다.

## 건설현장 취업관리제 확대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출국으로 야기되는 건설업의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 내국인 고용을 적극 유도하고 취업관리제를 확대키로 했다.



취업관리제란 주로 국내에 연고가 있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4)체류 자격을 부여해 입국을 허용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관리제의 경우 외국인력 대상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적기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인력난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강제출국대상 불법체류자는 현재 총 12만여명 이고 이 가운데 건설현장 근로자는 2만4천여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이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내국인 고용을 증대시키고 내년부터 취업관리제를 확대하게 되면 건설업의 대규모 인력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2만 373명의 외국인이 잔류하고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2만8천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신규로 취업해 동절기 임을 감안했을 때 건설현장의 인력난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하갑래 고용정책심의관은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자진신고한 외국인력은 총 5만6천여명으로 올해 내국인의 신규취업 인력 2만8천명과 합법화 조치 후 잔류 외국인력 2만1천명, 산업연수생 6천명을 더하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며 “내국인력 확충과 함께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부터는 취업관리제를 확대해 건설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난 5월 법무부 자진신고 결과로 파악된 5만6천명의 외국인근로자수에는 신고하지 않은 인원과 지금까지 새로 유입된 인원이 제외돼 수치상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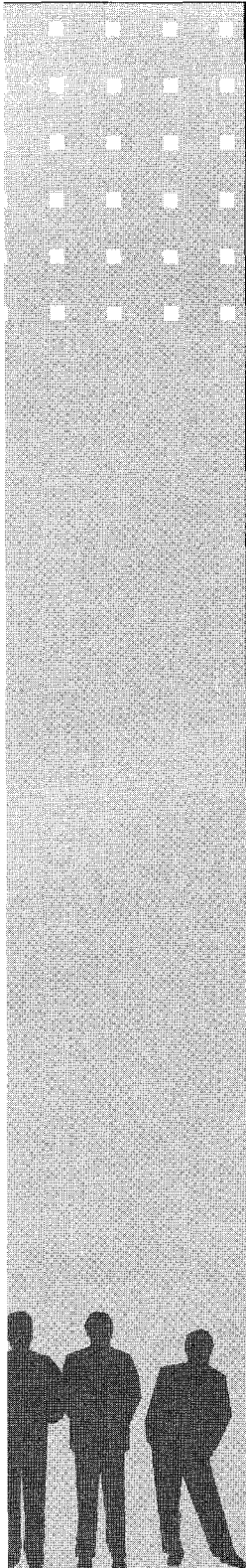
또한 취업관리제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의 경우 국내 동포로서 8촌 이내의 친·인척이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등 대상선별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부족인원을 확충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법무부에 신고된 5만6천명의 외국인력은 실제 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일당에서 1만~2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취업관리제도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실시되려면 외국인력 대상자 선별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내국인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나 취업관리제도를 통해 충원할 인력에 대한 규모와 시기 등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대상의 규모가 정부나 관련단체, 연구기관간의 추정치가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최소 4만명에서 12만명 이상까지로 무려 8만명



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단기간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추방이 이뤄질 경우 건설현장의 인력수급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2년 못지 않은 인력대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은 인력수요가 줄어드는 동절기로 접어들어 큰 문제가 없지만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부터 수급차질과 임금 급등 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사들은 경기하강으로 인한 수주난과 더불어 인력난까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 불법체류자 규모

주대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는 것이 전혀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화 돼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들이다.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연수생으로 현재 7천500명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법화 조치로 1만8천명 정도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조선족들이 건설현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며 합법화대상의 몇배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있는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점과 조선족의 경우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등 의견상 드러나지 않아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조사를 나오더라도 사업주가 불법인 줄 알면서 외국인 근로자실태를 사실대로 말하겠냐고 반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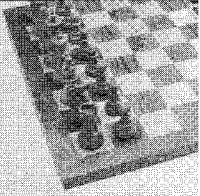
또 시공참여자 등이 조선족을 고용해 공사에 참여할 경우 내국인과 구별이 안돼 사업주도 불법체류자인지 모르는 인력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기관이 추정하는 불법체류자의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11월 현재 불법체류자는 6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3~5월경 실시한 불법체류 자진신고에서 파악된 5만6천명에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법화대상 1만8천명을 제외할 경우 4만여명 정도가 강제출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도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어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자료로만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사는 건교부의 추정치보다는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수도권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인력 가운데 30% 정도인 9천~1만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연간 50만여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고 민간공사현장의 경우 주공현장보다 많은 것이라는 점과 토목공사현장 등을 감안하면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불법체류자 규모가 11만6천명이라는 추정도 제시돼 있다.

이는 지난해 9~10월 건설협회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방문조사를 실시해 도출한 불법체류자의 비율 7.9%에 통계청의 건설기능인력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비해 건설산업연구원은 적어도 13만4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2만5천~2만7천명으로 추정되는 밀입국자도 포함돼 있다.

연구원은 15개 건설현장과 조선족 관련 단체, 건설연맹 관계자 면담 등 발로 뛰어 얻은 정보에 직종별 비율을 곱해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측이 제시하는 규모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다.

#### □ 강제 출국에 따른 파장과 대책

강제출국 대상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떠날 경우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11월 15일 이후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자는 강제출국시키고 고용주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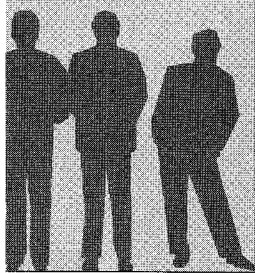
특히 이번 조치는 내년 8월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한 것이어서 과거와는 달리 단속의 강도가 높을 수도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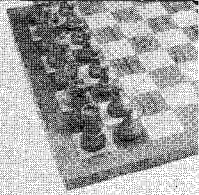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생산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강제출국에 따른 인력공백의 부작용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건설투자 증가세는 둔화되지만 올해보다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현장 인력수요도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들어 지난 9월까지 착공된 건축물은 8천205만7천㎡로 지난해 동기대비 5.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공사중단 및 임금상승과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연은 두가지 상황을 전제로 시나리오별로 파장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합법적인 도입이나 단속 미비 등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숙련공의 임금은 연간 8.3% 비숙련공은 4.6%가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 불법체류자의 추방이 이뤄질 경우 숙련공 확보경쟁이 재발되면서 상반기에만 19%, 비숙련공은 10.4%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상승이 건설사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외국인 근로자를 늘이기도 어려운 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이다.

현재도 내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내국인들이 실업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벽인력시장에서는 조선족 동포들의 건설현장 침투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인력을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숙련공의 기반이 와해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내국인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고 숙련기반을 와해시키지 않으면서 인력난을 막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4년 이상 불법체류 근로자가 강제 출국될 경우 최소 4만여명의 기능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진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취업관리제 적용대상에 건설업종을 추가하고 대형 국책사업은 숙련된 기능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 산업연수생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건교부는 외국인력이 국내에 실질적으로 취업하는데는 상당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연내 도입인원 및 행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요청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연은 국내 수요와 숙련기반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도입 규모를 부족인력의 3분의 1인 5만명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을 산업연수생, 나머지를 취업관리자를 활용해 내년 성수기를 대비하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8월 이후 이를 고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되 노동시장 흐름을 보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불법체류자 단속 실시로 건설현장 외국인 사라져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실시되면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부족한 인력을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현장의 경우 공정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괄적으로 체류기간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분류해 출국시키기보다는 일정 정도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할 경우 합법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실시되고 4년 미만 국내에 체류한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해서만 건설업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요즘 건설현장에서는 재중동포 등을 제외한 외국인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이는 정부정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외국인 인력 없이는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나 업체 측에서도 입장은 같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만 남게 됐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현장은 이번 불법체류자 출국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지만 타 현장과 전체 건설현장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그 여파가 이들 현장에까지 미칠 전망이다어서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 □ 산업연수생 적극 활용 기업 늘어

일부업체에서는 산업연수생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건설업 할당인력 7천500명을 113개 건설업체가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건설기능인력이 13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분야 산업연수생은 7천500명 밖에 안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일부분에 머물고 있다.

현재 건설협회 외국인산업연수협력단에는 업체들이 주로 선호하는 태국, 중국, 필리핀 산업연수생 중심으로 40개사가 산업연수생 배정 차레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의 회원사들도 플랜트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9개 회원사에서 총 442명의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다.

이 중 태국의 연수생이 100명, 중국 49명, 우즈벡 15명, 필리핀이 258명으로 가장 많이 고용되어 있다.

설비업계는 국내 건설기능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 봄 이전에 산업연수생 인력의 확대는 물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외국인 인력의 수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